#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7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 강은미・류호정・민병덕

배진교 · 심상정 · 양정숙

용혜인 • 윤영덕 • 이은주

장혜영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

1호,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126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"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"을 "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- 가.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
- 나. 제126조의3에 따른 장해나 질병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사망"을 "사망하는 경우 또는 제126조의3의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질병"을 "질병 또는 제126조의3의 선천성 질환아의 출산"으로 한다. 제3장의3(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9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3장의3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

제91조의12(감염병 전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근로자가 감염

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

- 제91조의13(보험급여의 종류)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. 다만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,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.
- 제91조의14(요양급여)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근로 자로부터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  - ③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의료기관은 그 감염병 전염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.
- 제91조의15(장해급여) 장해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감염병에 전염되어 치유된 후 그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 거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- 제91조의16(간병급여) 간병급여는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 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- 제91조의17(유족급여) 유족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업무상의

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.

- 제91조의18(장의비) 장의비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감염병에 전염되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,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100분의 70을 그 장제(葬祭)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.
- 제91조의19(준용) ① 감염병 전염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0조(제1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), 제41조제1항, 제42조, 제43조제1항·제3항,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43조제1항·제3항, 제44조제1항, 제47조 및 제48조제1항 중 "근로자"는 "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"으로 보고,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중 "요양 중인 근로자"는 "동거하는 사람이 요양 중인 근로자"로 본다.
  - ② 감염병 전염에 따른 장해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제57조(제1항은 제외한다), 제58조, 제59조(제1항은 제외한다),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"장해등급의 근로자"는 "장해등급의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근로자"로 보고, 제58조제1호 중 "사망한 경우"는 "동거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"로 보며, 제60조제1항 중 "수급권자"는 "수급권자와 동거하는 사람"으로 보고, 제62조제1항·제2항 및 제71조제1항 중 "근로자"는 "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"으로 본다.

③ 감염병 전염에 따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보험급여 지급 등은 제36조(제1항과 제2항은 제외한다),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, 제80조(제4항은 제외한다)부터 제84조까지, 제84조의2,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, 제87조의2,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"근로자"는 "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"으로, 제83조제1항제1호 중 "요양 중인 근로자"는 "동거하는 사람이 요양 중인 근로자"로 보며, "재요양을 받은 사람"은 "동거하는 사람이 재요양을 받은 사람"으로 본다.

제7장에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6조의3(업무상 재해로 인한 선천성 질환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)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(因子)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(이하 "선천성 질환아"라 한다)를 출산한 경우 그 선천성 질환아에게 제40조, 제57조,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71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선천성 질환아"로 본다.
  - ② 선천성 질환아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과 선천성 질환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8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과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5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업무상의 재해"란 업무상의	1
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	<u>다음 각 목의</u>
<u>질병·장해 또는 사망</u> 을 말한	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/u>
다.	
<u>&lt;신 설&gt;</u>	<u>가.</u>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
	또는 사망
<u>&lt;신 설&gt;</u>	<u>나. 제126조의3에 따른 장해</u>
	<u>나 질병</u>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	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
준)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	준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	
부상·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	
거나 <u>사망</u> 하면 업무상의 재해	<u>사망하는 경우 또는 제12</u>
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	6조의3의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
이에 상당인과관계(相當因果關	
係)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업무상 질병	2
가.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	7}

적 인자(因子)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 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<u>질</u> 병

나. ~ 라. (생 략) 3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제91조의12(감염병 전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도전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

제91조의13(보험급여의 종류) 감

<신 설>

<신 설>

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. 다만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,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 연금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 활급여는 제외한다.

제91조의14(요양급여) ① 요양급 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 이 근로자로부터 감염병이 전 염된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거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 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 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감염병 전염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 되면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 람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.

제91조의15(장해급여) 장해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감 염병에 전염되어 치유된 후 그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</u> 지급한다.

제91조의16(간병급여) 간병급여는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
제91조의17(유족급여) 유족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업 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.

제91조의18(장의비) 장의비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감염병에 전염되어 사망한 경우에지급하되,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100분의 70을 그 장제(葬祭)를 지낸 유족에게지급한다. 다만, 장제를 지낼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100분의 70의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.

<신 설>

제91조의19(준용) ① 감염병 전염 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0조(제 1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), 제41 조제1항, 제42조, 제43조제1항· 제3항,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43조제1항·제3항, 제44조제1 항, 제47조 및 제48조제1항 중 "근로자"는 "근로자와 동거하 는 사람"으로 보고, 제48조제2 항 및 제49조 중 "요양 중인 근로자"는 "동거하는 사람이 요양 중인 근로자"로 본다. ② 감염병 전염에 따른 장해급 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 및 장 의비는 제57조(제1항은 제외한 다), 제58조, 제59조(제1항은 제 외한다), 제60조, 제61조, 제62 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"장해등 급의 근로자"는 "장해등급의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근로자" 로 보고, 제58조제1호 중 "사망 한 경우"는 "동거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"로 보며, 제60조제 1항 중 "수급권자"는 "수급권

지급 등은 제36조(제1항과 제2 항은 제외한다), 제76조부터 제 78조까지, 제80조(제4항은 제외 한다)부터 제84조까지, 제84조 의2,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, 제87조의2, 제88조부터 제90조 까지,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"근로자"는 "근로자와 동거 하는 사람"으로, 제83조제1항제 1호 중\_"요양 중인 근로자"는 "동거하는 사람이 요양 중인 근로자"로 보며, "재요양을 받 은 사람"은 "동거하는 사람이 재요양을 받은 사람"으로 본다. 제126조의3(업무상 재해로 인한 선천성 질환아에 대한 보험급 여 지급에 관한 특례) ① 근로

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

적 인자(因子), 화학물질, 분진,

자와 동거하는 사람"으로 보고,

제62조제1항·제2항 및 제71조

제1항 중 "근로자"는 "근로자

③ 감염병 전염에 따른 근로자

와 동거하는 사람의 보험급여

와 동거하는 사람"으로 본다.

<신 설>

병원체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 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,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천 적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 녀(이하 "선천성 질환아"라 한 다)를 출산한 경우 그 선천성 질환아에게 제40조, 제57조, 제 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71 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"근로 자"는 "선천성 질환아"로 본다. ② 선천성 질환아에게 지급하 는 보험급여의 신청 방법과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.